

# 「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」 사업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취약지역의 문화 향유 증진과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'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'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. 공연단체 및 지역 문예회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공모 개요

- (공 모 명)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
- (공모방향) 문화취약지역 문화향유증진 및 공연문화 활성화
- (지원기간) '24년 4월 ~ 12월
- (지원대상) ①민간 공연단체·기획제작사 / ②문예회관
- (지원내용) 공연 제작·홍보비
- (지원규모) 총 132억 / 건별 최대 1억원
  - \* 총 지원액 최대 1억원 지원 가능
  - \* 공연 규모·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지원신청액을 전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- (지원조건) 공연단가 1천만원~1억원 내 신청 건수 제한 없으나, 신청 주체당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- \* 문예회관 신청의 경우 총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의 10% 자부담금 책정 필수
- (지원장르) 연극, 뮤지컬, 무용, 클래식 음악, 오페라, 국악
  - \* 공연의 주된 장르가 대중음악인 경우 제외 / 갈리콘서트 형식의 사업(공연)은 지원 신청 불가
  - \* 장르 구분

국악	연희, 국악성악, 국악기악, 민요 등
무용	발레, 현대무용, 한국무용 등
뮤지컬	창작뮤지컬
오페라	오페라(창작오페라 포함)
클래식 음악	현대음악, 오케스트라, 실내악, 합창 등 성악 및 기악
연극	연극(창극, 인형극, 마당극, 마임(년버벌) 등 포함)

## □ 공모 세부 내용

- (신청주체) 민간 공연단체, 문예회관
  - \* 국내·외에서 최근 3년 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이 있는 민간공연단체·법인·기획제작사(단, 일시적 공연권 보유로 유통·배급이 주 사업인 경우 신청 불가)
  - \* 문예회관은 '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림(272개)' 기준이며,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

\* 서울 소재 문예회관 신청 불가 및 공연단체의 서울 유통 공연도 신청 불가

○ (신청대상 사업)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기 창제작 작품을 활용하여 공연단체·공연장과의 협력을 기반으로, 지역 공연 관객 개발·확대 가능한 공연

- (작품) '2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1회 이상 전막공연·발표된 기 창작작품  
\* 유료화된 전막 트리아아웃(tryout) 공연, 전막 쇼케이스 공연은 발표된 기 창작작품으로 인정
- (공연조건) 연내 1개 지역 이상, 1회 이상의 유료공연 필수 개최 \* 서울 공연 제외
- (가점) ①인구 감소지역(군 이하 단위만 해당) 및 ②혁신도시 공연, ③타 기관(재단)으로부터 국비·지방비 등 지원 등 창작지원 선정된 공연 작품

<b>※ 참고사항</b>
- (인구감소지역) 행정안전부 지정 '인구감소지역' 참고 ▶ <a href="#">링크</a>
- (혁신도시) 국토교통부 지정 '혁신도시' 참고 ▶ <a href="#">링크</a>
- (신청가능조건) 신청 총액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· 신청가능 예시: 신청주체 A가 2개 이상 작품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, (가)작품 6천만원, (나)작품 4천만원으로 총액 1억원 내 신청 가능 · 신청불가능 예시: 신청주체 B가 동일 작품으로 중복 신청 불가능, 2개 이상 작품으로 신청할 경우 (가)작품 6천만원, (나)작품 6천만원 신청 불가능
- (신청지역) 서울 소재 문예회관 신청 불가, 민간단체의 경우 서울 소재의 단체도 신청 가능 * 특정 신청주체의 집중 수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시 최종 선정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음
- (기관(재단) 창작지원) 한국문화예술위원회 <공연예술창작산실> 등

- (티켓) 장당 최소 정가 10,000원 이상 책정, 온라인 티켓예매·발권 필수  
\* 공연 티켓 할인 정책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
\*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에서 '24년 티켓판매수·판매액 공개 예정
- (초청) 무료 초청의 경우, 객석 수 10% 이내 초청 가능  
\* 10%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비 외 자체 예산으로 진행
- (수익금) 총 자부담을 초과하는 매출액(티켓 판매액, 부가상품 판매, 후원금 등)은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 및 사용계획서(재투자) 제출 필수
- (협력대상) 민간단체 신청 시, 협력 문예회관의 10% 부담금 집행계획 포함, 정산 시 협력 실행 내용 확인 가능한 결과자료 제출 필수

**※ 유의사항**

- 문예회관은 총 사업비의 10% 자부담금 필수(신청주체, 협력대상일 경우 모두 해당)
- 문예회관 신청 시 단체에게 용역비 항목으로 보조금 집행 가능. 용역비 정산은 증빙 자료 취합하여 e나라도움 제출. 문예회관은 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자부담 편성 후 e나라도움에서 직접 집행

- (공연 공간)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 공연장
  - \* 공연 공간은 문예회관에 속한 공연장으로 제한(문예회관의 야외공연장 포함가능)
  - \* 단, 야외 공연장에 대한 ‘안전관리 계획’(자유양식) 제출 필수

○ 신청주체 및 협력대상 의무사항 \* 미충족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

**(1) 신청주체**

- (교부신청·집행·정산)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 신청, 집행 및 정산 필수
- (신청주체 의무사항)
  - (민간단체) 자부담 의무 없음, 협력주체인 문예회관의 자부담금 10% 집행계획 제출
  - (문예회관) 자부담 의무 있음, 총 사업비 10% 자부담금 조성하여 예산편성 필수
- (서면계약 체결) 모든 계약은 서면계약 체결 필수
  - \* 단, 자체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, 문체부 제정 <공연예술표준계약서(창작, 출연, 기술지원)>, <공연예술분야 표준대관계약서> 활용 권장
- (참여예술가 사례) 공연 참여예술가·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제공
  - \* 예산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제공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
- (공연정보 아카이빙) 영상·사진, 디자인·홍보물, 참여인력정보(창작진·배우·스태프·협력대상 등) 제출
- (관객만족도 조사 실시) 공연 관람한 관객 만족도 조사 필수 실시
- (모니터링·평가 참여) 사업 선정 시,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·협조 필수

**(2) 협력대상**

- (협력대상) 민간단체 및 문예회관
- 협력대상별 의무사항
  - (민간단체) 용역비에 대한 예산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  - (문예회관) 공간협력 및 10% 자부담금(홍보, 마케팅, 연계사업 등) 조성 필수

○ (지원신청 불가) 모든 참여주체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

- \* 동일 작품으로 여러 신청주체가 신청한 경우 심의 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구 분	내 용
신청	• 동일 작품으로 24년 ‘문화예술 전국 창작작 유통 지원에 포함된 허위사업 중복 신청 불가

구 분	내 용
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연예술 유통, 국립예술단체 전막 공연 유통</li> <li>● &lt;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&gt; 2개년 사업 선정 수행 공연단체 신청 불가</li> <li>● 서울 소재 문예회관 신청 불가</li> <li>●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단체 및 문예회관(예외없음)</li> <li>● '24년에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작품(공연)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</li> <li>●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, 기획제작사, 공연장, 개인예술가 등</li> <li>● 공연장, 공연단체의 협업 사업이 아닌 단순 대관 공연</li> <li>● 본 사업에 신청하는 공연 작품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이미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</li> <li>●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</li> <li>●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,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</li> <li>● 대중음악 공연 및 정기연주회,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</li> <li>●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●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 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3.01.27.개정)</li> <li>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</li> <li>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●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●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공연장</li> <li>●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이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및 공연장</li> </ul>

- (지원심의 불가) 모든 참여주체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  
\* 심의·선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구 분	내 용
심의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미정산)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</li> <li>● (미반납)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</li> <li>● (부정수급)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예경으로 통보된 단체·개인</li> <li>● (저작권)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</li> <li>● (공연이력)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공연, 사업, 작품</li> </ul>

구 분	내 용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복선정 불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위원회에서 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는 공연, 사업, 작품</li> <li>- 동일한 공연 작품으로 타 기관의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더라도, 최종적으로 중복 선정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	
	사업명	중복선정	세부내용
	타 기관(재단) 보조사업 * '24공연예술창작주체 타 기관 창작지원사업 등	불가	동일한 공연 사업, 작품은 중복 선정 불가

○ (예산편성) 신청주체 및 협력대상의 공연 콘텐츠 유통 예산

※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

- 신청주체에 따른 예산편성
  - (민간단체) 자부담 의무가 없으나, 협력주체인 문예회관의 자부담 10%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
  - (문예회관) 자부담 의무가 있으며, 총 사업비 10% 자부담금 조성하여 예산 편성 필수
- 예산편성 항목 예시 (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
목	세목	자부담금	보조금	비고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 (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연 창제작 관련 전문인력 사례비</li> <li>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 전문인력 사례비</li> <li>- 홍보·마케팅비</li> <li>- 공연 소품비(소모품)</li> </ul>		
	공공요금 및 제세 (0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해보험료, 화재보험료, 행사보험료 등</li> </ul>		*사업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
	임차료 (0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습실 대관비(협력 문예회관 공간은 불가)</li> <li>- 무대, 조명, 음향 장비, 필요 물품 임차비 등</li> <li>- 공연 유통(물품운송 및 버스) 관련 임차료</li> </ul>		
	복리후생비 (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술인 고용 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</li> </ul>		*사업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 가입필수
	일반운영비 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비(업체 용역)</li> <li>- 촬영 및 영상 제작대행비(업체 용역)</li> <li>- 홍보대행비(업체 용역) 등</li> </ul>		*공연 영상 및 사진 촬영 등은 자부담금 편성 권장

- 사업추진비(다과, 식대 등), 회의진행경비,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(소모품비, 사무 기기 임차료 등),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·집행 불가
- 공연을 위한 대관료 편성 불가(외부 연습실 대관비는 허용, 문예회관 공간 대관비는 불가)
- 단체 대표의 경우, 주요 역할(연출, 안무, 예술감독 등)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할 수 있으나, 본 사업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 불가능
- 부가세의 경우, 과세자(일반과세자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금)로 편성·집행 불가하나, 면세자(간이과세자 포함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금)로 편성·집행 가능 \*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과세자로 간주(필수)
- 과세자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공급가액으로 기재(자부담 포함)

## □ 공모 신청 방법

- (신청방법)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
- (신청기간) 2024. 1. 3.(수) 10:00 ~ 2. 13.(화) 12:00(정오)까지
  - \*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,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(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)
  - \*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, 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
  - \*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, 2~3일 전 접수 권장
  - \*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이용'
- (신청서류)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\*추가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
필수 서류	<p>1. 공모신청서(붙임자료 포함) 1부 (양식 제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붙임자료 : ① 협약 책임 이행 서약서, ②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/li> </ul> <p>2. 신청주체 사업자등록증 및 공연장등록증 사본 중 1부 *고유번호증 제출 불가</p> <p>3. 공연단체의 최근 3년간('21 ~ '23년) 공연 발표 주요 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연 발표 주요 실적 2건 이상, 건별 증빙 1부씩(최대 3부 이내)</li> <li>* 공연 크레딧 등 발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프로그램북, 리플렛 등)</li> <li>* 파일은 저용량 변환 후 제출</li> <li>* 신청주체와 협력대상 간 협약서(혹은 계약서)는 <u>최종 선정 이후 제출 필수</u></li> </ul>
추가 서류	<p>4.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(자유양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원작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, 필수 제출</li> </ul> <p>5. 안전관리계획서 (자유양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야외 공연장의 경우, 필수 제출</li> </ul> <p>6. 유료 공연 증빙자료 (자유양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막 트라이아웃(tryout) 공연 또는 전막 쇼케이스 경우, 유료 공연 증빙 필수 제출 (포스터, 티켓 가격 명시, 티켓 예매 또는 정산 증빙자료 등)</li> </ul> <p>7. 공연장 등록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문예회관의 경우 필수 제출</li> </ul>

## □ 심의 및 선정 방법

### ○ 심의방법

- (사전 행정 검토) 지원 가능 대상 여부 및 첨부 서류 제출현황 검토
  - \* 필수 서류(서약서 등 포함) 누락한 경우, 서류 심의 대상에서 제외
- (서류심의) 사업계획을 포함한 총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적절성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및 최종 보조금액 확정

### ○ 심의기준

구 분	항 목	배점(안)
서류심의	○ 작품의 우수성 및 완성도 - 사업 내 구성된 작품의 우수 창작 공연으로서의 완성도 및 예술성	40점
	○ 사업내용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- 지역 공연 관객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적합성 - 사업 내용, 예산 편성(티켓 가격 책정 포함)의 적정성	30점
	○ 신청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충실성 - 사업 세부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10점
	○ 기대효과 - 향후 지역 공연 문화 활성화 기여도 및 확산 가능성	20점
	○ 가점 - 인구 감소지역(군 이하 단위만 해당) 유통 공연 - 혁신도시 유통 공연 - 타 기관(재단)으로부터 국비·지방비 등 지원 등 창작지원 선정된 공연 작품 * 3개 부문에 모두 해당되더라도, 가점 총점은 총 5점임	5점
계		105점

### ○ 심의일정 및 발표 일정(예정)

- (서류심의) '24년 3월 1주, 서류심의 진행 및 서류심의 결과발표
- (최종결과) '24년 3월 2주, 선정 사업 대상 최종 보조금액 발표
- (결과안내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  - \*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문의

○ (문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

- (이메일) [promokams2@gokams.or.kr](mailto:promokams2@gokams.or.kr)

\*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응대를 위하여 이메일 문의 및 응대 진행 예정, FAQ 업데이트 등을 참고 바람